

「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4. . .
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할 필요가 있어 추천 인원을 조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4조 심의위원회 위원 수정
 - 당 초:
 - ② 구미시의회운영위원회(이하 “의회운영위원회” 라 한다)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며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심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의장이 위촉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• 변경:

② (삭 제)

③ 심의회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심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을 추천하며, 의장이 4명 이내의 민간 위원을 위촉한다.

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을 추천하며, 의장이 4명 이내의 민간 위원을 위촉한다.

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	<p><u>위원장과 간사는 당 연직으로 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을 추천하며, 의장이 4명 이내의 민간 위원을 위촉한다.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신 설></p>	<p>⑤ <u>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.</u></p>
<p>제9조(연구활동 기간) (생략)</p>	<p>제9조(연구활동 기간 및 운영계획 수립)</p> <p>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	<p>제9조(연구활동 기간 및 운영계획 수립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② <u>의장은 12월 31일까지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의원연구단체 연구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1조(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) ① ~</p>	<p>제11조(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) ① ~</p>	<p>제11조(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) ① ~</p>

③ (생략)

<신설>

제12조(연구활동비 지원) 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의장은 제3항의 승인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
제12조(연구활동비 지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연구단체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(개정안과 같음)

제12조(연구활동비 지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(개정안과 같음)

부칙

다만, 제4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